

사단법인 탄소중립 아카데미 나무 창립총회 회의록

1. 회의 일시 : 2026년 8월 18일 화요일 16:00~18:00
2. 회의 장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19길 16 1층,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 111호실
3. 회의 안건
 - (1) 의안1호 : 설립취지서 채택의 건
 - (2) 의안2호 : 명칭 제정의 건
 - (3) 의안3호 : 정관 심의 및 제정의 건
 - (4) 의안4호 : 임원 선출의 건
 - (5) 의안5호 :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의 건
 - (6) 의안6호 : 출연재산 채택의 건

4. 회원 총수 : 19명 (발기인 포함)
5. 출석 회원 : 19명
6. 결석 회원 : 0명

7. 회의 내용

-사회자 이태일 (이하 사회자) : 사단법인 탄소중립 아카데미 나무의 창립총회 순을 차례대로 안내함. 이후 성원 보고한 뒤 임시의장으로 발기인 대표 안병옥을 추대함. 만장일치 전원 박수로 추대에 동의함. 이후 진행은 임시의장에게 인계하고 사회자는 물러남.

-임시의장 안병옥 (이하 임시의장): 간단한 인사 뒤 창립총회 주재 시작함. 안건 심의에 앞서 창립총회 회의록 서기에 김roots을 지명함.

의안1호 : 설립취지서 채택의 건

- 임시의장 : 법인의 1호 안건, 설립취지서 채택의 건을 상정함. 임시의장이 총회 자료집에 수록된 설립취지서를 직접 낭독함. 설립취지서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묻음.
- 회원전원 : 원안에 모두 동의함.
- 임시의장 : 참석 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별첨1】 설립취지서 1부

의안2호 : 명칭 제정의 건

- 임시의장 : 의안 2호, 명칭 제정의 건을 상정함. 본 법인의 설립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나타내고, 향후 법인 설립 허가, 등기 및 대외 활동에 사용할 공식 명칭을 ‘사단법인 탄소중립 아카데미 나무’로 정할 것을 제안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묻음.
- 회원전원 : 원안에 모두 동의함.
- 임시의장 : 참석 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의안3호 : 정관 심의 및 제정의 건

- 임시의장 : 의안 3호, 법인의 정관 심의 및 제정의 건을 상정함. 법인 운영의 근간이 되는 근본 규칙을 「민법」 제32조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만든 정관 예시를 기초하여 작성하였음을 부연 설명하고, 정관 조항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감.

- 제1장 총칙 : 목적, 명칭, 사무소, 사업 등에 관한 내용
- 제2장 회원 : 회원 자격, 권리와 의무, 탈퇴 및 제명, 후원자 등에 관한 내용
- 제3장 임원 : 임원 종류, 임기, 직무, 선출 방법 등에 관한 내용

- 제4장 총회 : 기능, 소집 절차, 의결 정족수 등에 관한 내용
- 제5장 이사회 : 기능, 의결 정족수, 소집 절차 등에 관한 내용
- 제6장 자문 및 운영조직 : 명예이사회, 운영이사회, 위원회 등에 관한 내용
- 제7장 재산 및 회계
- 제8장 정관 변경 및 해산
- 제9장 보칙 등

[별첨2] 정관 1부

- 임시의장 : 총회 자료집에 따라 주요 내용을 설명한 후 회원들의 의견을 묻음.
- 회원 신용승 : 제18조 제2항과 관련하여 임원이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 강의 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질의함.
- 임시의장 : 임원이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교육·강의·연구·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일반 임원 보수와는 별개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관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 회원전원 : 제18조에 제3항을 신설하는 것에 동의함.
- 임시의장 : 제18조에 다음과 같은 제3항을 신설하기로 함.
 - ③ 임원이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교육·강의·연구·자문 등의 업무를 별도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 및 절차는 이사회의 의결로 별도로 정한다.
- 회원 송영일 : 원장 보직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설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제안함.
- 회원전원 : 관련 조항 보완에 동의함.
- 임시의장 : 제3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함.
 - ③ 운영이사회는 원장이 주재하며, 원장은 운영이사회를 통하여 법인의 사업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무 현안의 협의·조정을 총괄한다.
- 회원 임정근 : 제33조의 위원회 규정은 향후 사업 확장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별 위원회 명칭을 삭제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함.
- 회원전원 : 제안에 동의함.
- 임시의장 : 제3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함.

① 법인은 목적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회원 박상철 : 제39조의 회계 구분은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가 아닌 비수익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제시함. 또한 제40조의 회계기준은 비영리법인 회계기준보다 공익법인 회계기준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함.

-회원전원 : 제안에 동의함.

-임시의장 : 제39조와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함.

제39조(회계의 구분) 법인의 회계는 비수익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제40조(회계원칙)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 또는 관계 법령상 적용되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회원 이종오 : 제44조의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 공개 시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함.

-회원전원 : 제안에 동의함.

-임시의장 :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함.

제44조(기부금의 공개) ① 법인은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② 공개의 범위 및 방법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시의장 : 상기 수정사항을 반영한 정관(안)에 대하여 추가 의견이 있는지 물음.

-회원전원 : 수정된 정관에 모두 동의함.

-임시의장 : 참석 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사항을 반영한 정관이 원안 수정의 결되었음을 선포함.

의안4호 : 임원 선출의 건

-임시의장 : 의안 4호, 법인의 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함. 본 법인의 초기 안정적인 운영과 목적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인을 대표하고 이끌어갈 초대 이사장으로 서병륜, 이사로 안병옥을 포함한 29명, 사업감사로 박창신 변호사, 회계감사로 박상철 회계사를 제안함.

▷ 이사장 : 서병륜

▷ 이사 (29명) : 안병옥, 강우현, 강인순, 김광범, 김룻, 김수현, 김익수, 김혜애, 류종성, 박태웅 / 손성환, 송영일, 신용승, 오수길, 윤순진, 윤제용, 이병화, 이상훈, 이우균, 이정희 / 이태일, 임성진, 임정근, 장미정, 전의찬, 정남순, 추장민, 이종오, 이한경

▷ 감사 (2명) : 박창신, 박상철

-회원전원 : 원안에 모두 동의함.

-임시의장 : 참석 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서병륜을 이사장으로, 안병옥 포함 29명을 이사로, 박창신 및 박상철을 감사로 선출하는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따라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음을 설명함. 이후 총회는 정관에 따라 선출된 초대 이사장 서병륜이 이어서 주재하기로 함.

-의장 서병륜 (이하 의장) : 법인의 초대 의장으로서 인사를 밝힌 뒤 남은 안건의 심의 과정에 들어감.

[별첨3] 임원 명부 1부

의안5호 :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의 건

-의장 : 의안 5호, 법인의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건을 상정함. 2026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 본 안을 운영사무국이 설명해 주길 요청함.

-운영사무국 김노경 : 총회 자료집 29페이지 2026년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설명함.

-의장 : 질의 및 의의 있는지 물어봄. 원안대로 찬성한다면 박수로 통과시켜 달라고 제안 요청함.

-회원전원 : 의장의 제안에 찬성하며 모두 박수 침.

-의장 : 전원 찬성으로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별첨4]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1부

의안6호 : 출연재산 채택의 건

-의장 : 의안 제6호 출연재산 채택의 건을 상정함. 본 법인의 원활한 설립과 초기 목적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김원호가 현금 20,000,000원, 류종성이 현금 5,000,000원을 출연하여 총 25,000,000원을 법인의 운영재산으로 편입하고자 함을 설명함. 또한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서병륜이 법인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하여 현금 50,000,000원을 운영재산으로 추가 출연할 것을 현장에서 약정함. 이를 법인의 운영재산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함.

-회원전원 : 원안에 서병륜 초대 이사장의 출연금까지 포함하여 이를 법인의 운영재산으로 채택하는 것에 모두 동의함.

-의장 : 참석 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서병륜이 현장에서 출연 약정한 현금 50,000,000원과 김원호가 출연한 현금 20,000,000원, 류종성이 출연한 현금 5,000,000원을 본 법인의 운영재산으로 승인 및 채택하는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8. 폐회

-의장 : 참석 회원들에게 상정할 다른 안건이 있는지 물은 뒤 기타 안건이 없음을 확인함. 안건 6건 모두 심의를 마쳤으며, 2026년 8월 18일 화요일 오후 5시 42분 사단법인 탄소중립 아카데미 나무의 창립총회의 폐회를 선언함.

-사회자 : 참석 회원 전원의 ‘회의록 날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작성된 회의록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인감 날인할 것을 요청함.

2026년 8월 18일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1부
 3. 임원 명부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계획서 1부
 5. 회원 명부 1부
-

